

울촌,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관한 최초의 무죄 판결 이끌어내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은 2024. 12. 19. 자동차부품제조회사 (이하 "A회사") 사업장에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가 압축성형기에 끼어 압착되다가 튕겨 나오면서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충격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망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A회사 대표이사 등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4. 12. 19. 선고 2023고단510 판결, 이하 "대상판결").

울촌은 A회사 및 대표이사의 변호인으로, 원청으로서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수공구의 사용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였다는 점, 이 사건 사고는 합리적으로 예견하기 어려운 사고로서 이에 대비한 안전조치는 기대하기 어려웠던 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을 다하였고 설령 미흡한 점이 있었다라도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A회사 대표이사 등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I. 사건의 개요 및 판결 요지

1. 사건의 경위 및 공소사실 요지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 B는 자동차부품 제조 공정에서 압축성형기에 원재료를 투입하여 가동시키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작업의 작업표준에 의하면 압축성형기의 금형에 원재료를 손으로 투입하도록 정하고 있음에도, B는 원재료가 금형에 잘 안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소재의 수공구를 임의로 사용하여 원재료를 두드려가며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B가 실수로 해당 수공구를 금형의 슬라이드 반판 위에 그대로 올려둔 채 압축성형기를 가동하자 수공구가 압축성형기 내부로 끼어들어가 압착되어 튕겨나가면서 그로부터 약 7m 떨어진 곳에서 작업 중이던 같은 협력업체 소속의 피해자 이마를 가격하여 치료 중에 사망하게 된 것입니다.

검사는 피해자의 고용주인 협력업체 사업주 C를 ① 수공구를 제작 당시 목적과 달리 사용하였음에도 방치하였다는 점, ② 설비 운전 시작 전 위험방지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고, 근로자 B를 수공구

Related Areas

중대재해 센터

노동

송무

Contact

이승호 변호사

02-528-5564

seungholee@yulchon.com

이광선 변호사

02-528-5095

kslee@yulchon.com

정대원 변호사

02-528-5252

dwchung@yulchon.com

김동현 변호사

02-528-5312

donghyunkim@yulchon.com

전예아 변호사

02-528-6149

yajeon@yulchon.com

를 제작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가 설비 내에 실수로 올려둔 점을 이유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하였습니다. 한편, A회사와 A회사의 대표이사인 D에 대하여는 C와 동일한 내용(도급인으로서의 의무위반)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과 ① 안전보건 전담조직 미설치, ②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미비, ③ 안전관리자 부족을 이유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각 기소하였습니다.

2. 대상판결의 요지

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점

대상판결은 먼저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경우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작업이 이루어지도록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성립되는 것이고,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의 다른 가능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위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09도13252 판결)를 전제하여,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① 수공구의 제조 당시 목적이 정확하게 무엇이었는지가 증명되지 않아 수공구를 제작 당시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함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볼 수 없고, ② A회사와 협력업체의 각 대표자인 D와 C로서는 작업표준에도 없는 수공구가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을 들어 이들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모두 부정하였습니다.

나아가 대상판결은 설령 D와 C가 수공구의 사용을 알고도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의 경위 및 안전보건규칙에서 사업주에게 부과한 안전조치의 규정과 목적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예상 가능한 산업재해가 아니었고 그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 업무상과실치사의 점

대상판결은 먼저 업무상과실이 인정되려면 피고인들이 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예견하지 못하였는지, 그리고 결과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지 못하였는지가 검토되어야 하고, 그 과실의 유무를 판단함에는 같은 업무와 직무에 종사하는 일반적 보통인의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주의 정도를 표준으로 하여야 하며, 통상 예견할 수 있는 범위를 넘는 이례적인 사태의 발생까지 예견하고 대비할 것까지 요구할 수는 없다는 법리(대법원 2021. 11. 11. 선고 2021도11948 판결 등)를 전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이 된 수공구는 작업표준에 없는 도구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들이 이 작업의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도구였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사업주로서는 수공구 사용을 지시하거나 방치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사업주의 예견가능성을 부정하였습니다. 또한 실제 수공구를 임의로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근로자 B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수공구의 재질과 압축성형기에 설치된 방호장치의 기능 등에 비추어 B로서도 수공구를 사용하다가 압축성형기에 수공구가 끼이더라도 고온·고압에 의하여 녹거나 파손되지 않고 그 수공구가 튕겨 나올 것까지 예견하기란 어렵다고 보아 B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역시 부정하였습니다.

다.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의 점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상 형사처벌을 위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제2조에서 규정한 중대재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므로,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되는 경우라도 종사자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 규정으로 처벌할 수 없고,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러한 의무위반행위만을 별도로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도 않다고 판시함으로써,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은, 우선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으로 기소된 사항 중에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업무절차 마련 여부에 대하여, D가 이 사건 사고와 같이 수공구가 끼어들어가 튕겨 나오는 경우를 예견할 수 없어 비래의 위험에 대한 항목을 포함시키지 않았더라도,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여 이행해 온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그외 법정 기준 이상의 안전관리자 배치는 이행된 것으로 판단). 다만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보았음에도, D가 수공구의 사용을 알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사고가 예견하기 어려웠던 점에 비추어 안전보건 전담조직이 구성되지 않은 것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중대재해처벌법위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II. 의의 및 시사점

대상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같은 법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첫 사례입니다. 대상판결에 앞서 2024. 10. 16. 대구지방법원영덕지원이 중대재해처벌법위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바 있지만, 해당 판결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부칙의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여부에 따른 법 적용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사안으로서,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관하여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법 위반을 이유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려면 이들이 같은 법에서 규정한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중대산업재해에 '이르게' 한 경우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제6조) 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요구되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상판결 이전에도 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위반 사건에서 ①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 → ② 현장의 구체적인 안전보건 조치의무 위반 → ③ 중대재해의 결과 발생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2단의 인과관계'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는지를 판단하였습니다(제주지방법원 2023. 10. 18. 선고 2023고단146 판결, 대구지방법원 2024. 1. 16. 선고 2023고단3905 판결,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24. 8. 21. 선고 2023고단95, 2023고단1448 판결 등).

울촌은 이를 주목하여 설령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 사건 사고 자체가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점과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안전조치의를 다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이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형사법의 대원칙에 따라 인과관계와 고의, 예견가능성에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였고, 위와 같은 주장을 받아들여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인과관계가 부정된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 율촌은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로서의 위험성평가가 실제 사업장에서 실시되는 작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점을 제시하여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가 마련되어 운영 중이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설령 문제된 수공구가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그 이유는 수공구가 작업표준에서 허용되지 않은 도구이고 A회사로서는 해당 수공구를 사용하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기 때문이며, 그렇다하여 위험성평가 절차 자체가 마련되지 않거나 실시되지 않은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대상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수용하여 A회사에 사업(장)의 특성을 반영한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절차가 마련되어 실시되고 있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판단은, 사고의 원인이 된 유해·위험요인이 위험성평가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만연히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자체가 마련되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경향에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